산일전기 ESG 정책집

2026. 05

SANIL ELECTRIC ESG Policy Book

Contents

Environment	환경경영정책	3
Social	인권경영정책	8
	안전보건정책	12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16
	공급망 행동강령	20
Governance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22
	준법경영정책	25
	조세정책	28
	윤리규범	31
	윤리규범 행동준칙	32
	기업지배구조헌장	34

환경경영정책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이하 '회사')가 기업 활동 및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환경지표 개선을 통해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환경경영: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정책 수립, 계획, 실행,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2. 이해관계자: 회사의 경영활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사, 투자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다.

3.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배출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최적방지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수준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된 환경 관리 기술을 의미한다.

6.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전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소모 축소 등 환경친화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체계 및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

8. 환경 실사(Due-diligence): 인수 및 합병(M&A), 투자 및 사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환경 리스크와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하고, 예방·완화 및 시정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2. 회사는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본 정책의 준수를 권장하며 동참을 유도한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2장 환경경영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제 4조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1.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는 환경경영의 전략, 목표 및 이행 성과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2. 대표이사는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지원한다.

제 5조 (실행 조직 및 보고)

1. **환경경영 전담 조직**은 환경 리스크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2. **관련 부서는** 환경 관리 실적 및 목표 달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모니터링한다.

제 3장 환경경영 일반 원칙

제 6조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1. 회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2. 제품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여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7조 (대기환경 관리)

1.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대해 법적 허용 기준 보다
엄격한 사내 배출 허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2. 신규 생산 공정 및 설비 도입 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3. 최적방지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적용하여 먼지(Dust)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 집진기 설치, 고사양 활성탄 교체 및 저효율 방지시

설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대기오염물질별로 정량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제 8조 (폐기물 및 자원순환)

1. 전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자원 순환경제에 기여한다.

2. 폐기물 외주업체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모니터링한다.

제 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1. 화학물질 구매 전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 원부자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비상사태 대비 시나리오 수립 및 정기적인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제 10조 (수질 및 수자원 관리)

1. 회사는 용수 절감·재이용 및 설비 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2. 회사는 공급망 전반의 수자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사는 수자원 관련 법규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 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4장 친환경 제품 및 가치사슬

제 11조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투자)

1. 회사는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Life-cycle)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고효율 제품 및 저탄소·친환경 전력 기기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소모 축소 등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친환경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3. 회사는 주요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하여 제품의 환경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소비와 자원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한다

제 12조 (공급망 및 사업장 관리)

1. 협력회사 행동 규범에 환경 책임 준수 요건을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 인수 및 합병(M&A) 및 투자 시, 환경 실사(Due - diligence)를 실시하여 잠재적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고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한다.

제 5장 보칙

제 13조 (법규 준수 및 교육)

1.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2.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친환경 문화를 조성한다.

제 14조 (이해관계자 소통)

1. 회사는 환경경영 전략, 목표 및 이행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2. 회사는 고객사,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환경 정보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시에 제공하여 소통을 강화한다.

부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

환경안전보건방침

산일전기는 '환경', '안전', '보건'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아래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충족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2. 환경보전과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환경 및 보건안전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방지 및 지속적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3.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중요사항은 근로자와 협의하에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전 임직원이 성실히 수행한다.
4. 환경보건안전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보건안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5.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의 근원적 제어를 통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감에 노력한다.

대표이사 박동석 朴東錫 | 대표이사 한익희

인권경영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이하 '회사')가 사업 활동 전반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인식하며,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 규범의 준수) 회사는 UN 세계인권선언(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ILO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UNCRC)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규범과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인권:**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 산일전기에 고용된 모든 임원과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및 임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주주 및 투자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인권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5.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완화 및 시정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자유롭고 사전 인지된 동의'를 의미하며, 사업 부지 선정이나 자원 이용 시 원주민 등 지역 공동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지체 없는 조사와 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2. 회사는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본 정책의 준수를 권장하

며 동참을 유도한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 (차별금지)

1.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등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2. 회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임직원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인도적 대우 및 괴롭힘 금지)

1. 폭행, 협박, 인신매매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7조 (아동노동 금지)

1. ILO 핵심 협약 및 국제 기준에 따른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8조 (근로조건 및 결사의 자유)

1.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공정한 임금과 급여명세서를 제공한다.

2. 회사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9조 (이주 근로자 보호)

1. 회사는 이주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2. 이동의 자유 보장: 여권, 신분증, 노동 허가증 등 개인 서류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3. 불공정 계약 금지: 회사는 투명한 채용을 위해 구직자에게 어떠한 채용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근로 조건의 왜곡 없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

제10조 (산업안전 및 보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 정기 교육,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원주민 권리 보호)

1. 회사는 사업 운영 지역의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토지, 자원, 문화적 유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2. FPIC 원칙 준수: 사업 부지 선정이나 자원 이용 시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유롭고 사전 인지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통한다.

3. 원주민의 생계 수단이나 주거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당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한다.

제12조 (공급망 및 지역사회 책임)

1.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원한다.

2. 지역주민의 환경권, 거주의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및 실사

제13조 (거버넌스)

1. **ESG위원회**: 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한다.

2. 인권경영 전담조직: 인권 리스크 파악, 교육, 보고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실사)를 실시한다.

2.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예방 및 시정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제4장 고충처리 및 구제

제15조 (신고 채널 운영)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당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센터(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16조 (제보자 보호)

1. 신고인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신고 절차를 운영한다.

2. 신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17조 (구제 절차)

1. 고충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2. 회사는 인권침해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공정한 징계 및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교육 및 공시)

1. 임직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이행 성과 및 실사 결과는 홈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정책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정책은 산일전기(이하 '회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제, 국제 표준(ISO 45001), ILO 안전보건 협약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안전보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임직원: 산일전기에 고용된 모든 임원과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및 임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체계, 책임, 절차 등을 구조화하여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는 경영 체계를 말한다.

6.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해를 말한다.

8. 아차사고(Near Miss):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잠재적 사고를 말한다.

9. 재해율(LTIR):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손실 재해 건수를 총 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산출하여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2. 회사는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본 정책의 준수를 권장하

며 동참을 유도한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기본원칙)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ISO 45001에 기반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책임경영 강화:** 경영진이 주도하는 안전보건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실천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3. **사전 예방 체계:** 위험성평가를 일상화하여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제 2장 관리체계 및 조직

제5조 (추진 조직)

1. 회사는 전사적 안전보건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경영책임자 직속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2. 정기적인 안전 간담회 및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한다.

제 3장 안전보건 실행방안

제6조 (위험성평가 및 현장관리)

1. 모든 공정 및 작업에 대해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거·대체·개선 조치를 취한다.

2.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 점검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교육 및 역량 제고)

1. 임직원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법정 교육 외에 직무별 특화 교육과 장비 운전 자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안전 포상제도(재해예방공로상 등)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안전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제8조 (비상대응체계)

1. 중대재해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의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2. 유관기관 및 주변 계열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한다.

제 4장 건강 증진 및 공급망 관리

제9조 (임직원 건강 증진)

1.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직업성 질병(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등)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10조 (협력사 상생협력)

1.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며, 결과에 따른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한다.

2. 협력사의 안전보건 교육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업 현장 내 보호구 착용 및 필수 안전 장비 비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

제 5장 목표 및 성과 관리

제11조 (성과 목표)

1. 회사는 매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한다.

2. 재해율(LTIR 등), 위험성평가 참여율, 비상훈련 실시 횟수 등 구체적인 KPI를 수립하여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제12조 (투명한 공개) 안전보건 경영 성과를 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

환경안전보건방침

산일전기는 '환경', '안전', '보건'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아래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충족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2. 환경보전과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환경 및 보건안전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방지 및 지속적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3.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중요사항은 근로자와 협의하에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전 임직원이 성실히 수행한다.
4. 환경보건안전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보건안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5.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의 근원적 제어를 통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감에 노력한다.

대표이사 박동석 朴東錫 | 대표이사 한익희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본 정책은 산일전기(이하 '회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급망 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 정기적인 실사와 개선 지원을 통해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공급망(Supply Chain): 고객에게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부터 조달, 제조, 운송, 유통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합니다.

2. 협력회사(Supplier): 산일전기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 파트너사, 합작사를 의미하며, 자사의 하위 협력사까지 포함합니다.

3.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공급망 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 정기적인 실사와 개선 지원을 통해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4. 녹색구매: 원부자재 조달 시 제품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저사용, 자원소모 축소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5. 협력회사 ESG 평가: 공급망 리스크 저감을 위해 매년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 자가진단(1단계) – 서면평가(2단계) – 현장실사(3단계) ' 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6. 환경·에너지 경영: 협력사가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재활용 등을 관리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친환경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7. 윤리 및 거버넌스: 뇌물 수수, 횡령 등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적용 범위)

1.본 정책은 회사의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과 회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 파트너사, 합작사에 적용됩니다.

2. 협력회사는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자사의 하위 협력사에도 본 정책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리스크 식별 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2장 ESG 관리 영역 및 기준

제 4조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1. 회사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 관리,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협력사를 우대합니다.

2. 협력사는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5조 (인권 및 노동)

1. 협력사는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및 국가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3. 협력사는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해서는 안 되며, 강제 노동과 관련된 원재료·부품·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 6조 (안전 및 보건)

1.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사태 대비 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7조 (윤리 및 거버넌스)

1.협력사는 뇌물 수수, 횡령 등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 3장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제 8조 (협력회사 ESG 평가)

1. 회사는 공급망 리스크 저감을 위해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협력사 ESG 평가를 실시합니다.

2. 평가는 '자가진단(1단계) - 서면평가(2단계) -현장실사(3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거래 규모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제 9조 (리스크 개선 및 지원)

1. 평가는 리스크 식별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회사는 식별된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2. 회사는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거나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거래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운영 및 소통

제 10조 (거버넌스 및 주관부서)

1. 구매부서는 공급망 ESG 관리의 주관부서로서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2. 주관부서는 중요 이슈 발생 시, 이사회 내 ESG 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결정과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 11조 (소통 및 고충 처리)

1. 회사는 본 정책의 이행 성과를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2.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가 ESG 관련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신문고'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행동규범

1. 개요 (Overview)

1.1 목적 본 행동규범은 산일전기(이하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및 경영시스템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규범은 회사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되며, 협력회사는 자신의 하위 협력회사(2, 3차) 또한 본 규범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준수 원칙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법규와 본 규범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인권 및 노동 (Human Rights & Labor)

2.1 자발적 근로 및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노예 제도, 인신매매, 부채 상환을 위한 강제노동 등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합니다.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주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2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보호 만 15세 미만(또는 현지 법정 최저 연령)의 아동 고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야간 및 초과 근무, 고위험 업무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2.3 근로시간 및 임금 현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며, 정해진 날짜에 급여 명세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4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및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성희롱, 체벌, 폭언 등 일체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합니다.

2.5 결사의 자유 현지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Safety & Health)

3.1 작업장 안전 관리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2 비상사태 대비 및 사고 관리 화재,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3 보건 및 위생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조리 및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4. 환경 (Environment)

4.1 환경 인허가 및 법규 준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며 최신 법규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4.2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화학물질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3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ESG 공시 핵심) 전사적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을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5. 윤리 및 공정거래 (Ethics & Fair Trade)

5.1 투명 경영 및 반부패 일체의 뇌물, 부패,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실천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합니다.

5.2 책임 있는 자재 조달 (분쟁광물)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분쟁광물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하며, 회사와 고객사의 광물 사용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3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회사 및 고객사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및 공급망 실사 (Management System & Due Diligence)

6.1 경영진의 책임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본 규범의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고위 경영진을 선임해야 합니다.

6.2 공급망 실사 대응 및 협조 협력회사는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서면 점검 및 현장 방문 실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6.3 고충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윤리 및 인권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가 보유한 정보자산과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며 데이터 보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정보자산: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지적 재산, 기술 정보, 경영 데이터 및 이를 관리하는 IT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2. 개인정보: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식별자(IP 주소 등), 위치정보,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3. 정보보호: 정보자산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이용,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산일전기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자사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협력사 및 아웃소싱 파트너 등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정책의 준수를 권고하며 필요 시 협력사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원칙

제4조 (법규 준수 및 거버넌스)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경영진의 감독하에 이행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1.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접근 제한 등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를 강구합니다.

3. 정보주체(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 (정보자산의 보안 관리)

1. 회사의 핵심 기술 및 경영 정보는 보안 등급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인가된 자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합니다.

2.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장 교육 및 성과 관리

제7조 (인식 제고 및 교육) 전 임직원의 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제8조 (점검 및 투명한 공개)

1.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합니다.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성과를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부 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준법경영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의 모든 경영활동이 국내외 법규와 기업윤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준법경영: 회사가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별 제반 법규, 국제 규범 및 사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2,법규: 산일전기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조례, 규칙 및 회사가 가입한 국제 협약과 내부 지침 등을 포함합니다.

3.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뇌물 수수, 공금 횡령, 정보 유출 등)를 의미합니다.

4.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정부 기관 등 회사의 준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1.본 정책은 산일전기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자사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공급망 내 협력사 및 파트너사에게도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법규 준수를 독려합니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장 준법경영 실천 원칙

제4조 (법규 준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반부패,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주요 경영 분야별로 세부적인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제5조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1.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어떠한 형태의 뇌물, 금품 수수, 부당한 접대나 편의 제공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고수합니다.

제6조 (이해충돌 방지)

1.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2. 임직원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자금세탁방지)

회사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 등 불법 자금의 이동 및 은닉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3장 준법 관리 체계 및 지원

제8조 (준법 지원 조직 및 내부통제)

1. 준법경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할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9조 (신고 제도 및 제보자 보호)

1. 법규 위반이나 부당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2.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제10조 (준법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형 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준법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부 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내외 조세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조세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조세 의무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및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세 등 산일전기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및 이에 준하는 공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2.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가격 및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3. 조세 회피: 상업적 실질이나 합리적인 사업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거래 구조, 계약 형식 또는 거래 장소를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세제 혜택의 활용은 인정하되, 상업적 실질이 없는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는 지양합니다.

4. 이해관계자: 주주, 투자자, 정부 및 과세당국, 지역사회 등 회사의 조세 정책, 납세 활동 및 조세 관련 정보 공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산일전기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사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협력사 등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조세 법령 준수와 투명한 납세 문화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장 조세 관리 원칙 및 체계

제4조 (조세 법령 준수)

1. 회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조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관리 절차를 운영하며, 신고·납부·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목적에 따른 세제 혜택, 공제·감면 및 조세특례의 활용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1. 의사결정: 이사회 및 경영진은 조세 리스크를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집니다.

2. 전담 조직: 회사는 재무부서 내에 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두며, 해당 기능은 조세 신고, 납부, 검토 및 관련 자료 관리 등 조세 실무를 수행합니다.

제6조 (투명한 거래 및 정상가격 적용)

1. 회사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2. 회사는 조세피난처 또는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허용하지 않으며, 실질이나 합리적인 사업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제3장 이해관계자 소통

제7조 (과세당국과의 관계) 회사는 과세당국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며, 투명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 시 회사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법적 권리 및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제8조 (정보 공개) 조세 납부 현황, 조세 관련 정량정보 및 정책 이행 성과는 관련 법령, 공시 기준, 영업상 비밀, 경쟁상 민감성 및 내부 검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윤리규범

1. 기본 책무

• 산일전기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우량 강소기업이 되고자 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2. 고객 및 거래처

•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3. 임직원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4. 국가와 사회

• 기업시민으로써 국가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윤리규범 행동준칙

1. 고객과의 거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모든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의 거래를 지양한다.

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10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회사 자산의 보호

회사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경비 사용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정보 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5. 직장인의 자세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6.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산일전기인의 명예를 지킨다.

- 산일전기와 산일전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7.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 문

산일전기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활동의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을 바탕으로 주주 권익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제 1 장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회사는 주주가 주주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3.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핵심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이사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관리·감독하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는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며,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2. 이사회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지닌 유능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3.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이사 선임에서 배제한다.

제 6 조 (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2.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출석률, 안건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한다.

제 8 조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3. 회사는 이사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선임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권한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은 명문으로 규정하며,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감사기구

제 10 조 (감사)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며,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와 일반 업무를 감사한다.

3.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감사 활동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제 11 조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독립된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감사 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 관련 주주의 질문에 답변한다.

제 4 장 이해관계자 및 공시

제 12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1. 회사는 고객, 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법령과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자의 권리 존중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회사는 합병, 분할, 감자 등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제 13 조 (공시)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2. 회사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 차별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SANIL